



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에 기초한 주거지 차별 또는 학대 보호 규정

- 1 뉴저지주 차별 금지법(LAD)은 주거지에서 트랜스젠더, 논바이너리, 또는 성별 비순응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식된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인식된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에 기초한 차별 또는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2 주거 제공자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을 기초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예를 들어, 판매자, 부동산 중개인, 집주인, 주택 소유주 연합 또는 기타 주거 제공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을 임대 또는 판매하기를 거부하거나, 수리를 거부하거나, 강제 퇴거를 시도하거나 더 높은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.
- 3 집주인과 기타 주거 제공자는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세입자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을 이유로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아파트 관리 회사는 관리인이 세입자를 성별 비순응이라는 이유로 학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4 LAD는 개개인이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관되도록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그들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과 일관되도록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, 또한 그들이 선택한 이름, 경칭, 또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성별에 대한 특정한 "증명"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공동 주택에서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을 염려하여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헬스장의 여성용 로커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.
- 5 집주인 또는 주거 제공자는 이상의 권리나 LAD에 따라 보장된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그러한 인물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,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1.833.NJDCR4U로 연락해주시십시오



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
NJCivilRights.gov

 **DIVISION ON
NJ CIVIL RIGHTS**
@CivilRightsNJ #CivilRightsNJ #StandUpAgainstHate



02/25/21